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70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이해민·조인철·김준형

김선민 · 서왕진 · 김재원

신장식・조 국・강경숙

박은정 • 윤건영 • 김우영

황운하 · 정춘생 · 차규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6년 「소득세법」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.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. 이에 따라 연구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%까지 증가하고 있음.

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,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.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시한 바 있음. 현행 「소득세법」은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뿐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.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

금 소득세제의 개선과 비과세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. 또한, 제12조제3호어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연 4,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개정하여,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함(안 제12조제3호어목 등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어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연 4,0 00만원 이내의"로 한다.

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중 "제22호, 제22호의2 및"을 "제22호,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제21조제1항제27호 및"을 "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7호,"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2의2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

- 가.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원업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
- 나.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 관계에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 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	
하지 아니한다.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소득	
가. ~ 서. (생 략)	가. ~ 서. (현행과 같음)
어.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제2	어
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	
받는 다음의 보상금(이하	
"직무발명보상금"이라 한	
다)으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	<u>연 4,000</u> 만원 이내
<u>정하는</u> 금액	의
1) • 2) (생 략)	1) • 2) (현행과 같음)
저. (생 략)	저. (현행과 같음)
4. • 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・②	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	③
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	
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	8

소득(이하 "분리과세기타소 득"이라 한다)

가.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 8호까지, 제8호의2, 제9호 부터 제20호까지, 제22호,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 른 기타소득(라목 및 마목 의 소득은 제외한다)으로 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 라 원천징수(제127조제1항 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 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된 소득. 다 만,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 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 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 한다.

나. (생략)

다. <u>제21조제1항제27호 및</u>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

라. • 마. (생략)

가
<u>제22호,</u>
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</u>
<u>제27호,</u>
라.•마. (현행과 같음)

- 9. (생략)
- ④ ~ ⑥ (생 략)
- 제20조(근로소득) ① 근로소득은 제20조(근로소득) ① ------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 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 금(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한다)
 - ②·③ (생 략)
- 제21조(기타소득) ① 기타소득은 제21조(기타소득) ① ------이자소득・배당소득・사업소득 · 근로소득 · 연금소득 · 퇴직소 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.
 - 1. ~ 22. (생 략)
 - 22의2.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 는 직무발명보상금

- 9. (현행과 같음)
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1. ~ 22. (현행과 같음)
- 22의2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가.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제2

호에 따른 종원업 등이 같 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 로부터 받는 보상금

나.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

 과 고용 관계에 있는 학생

 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

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

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

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
 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

 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

 보상금

23. ~ 26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23. ~ 2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